

정관

LOTTE FINE CHEMICAL

롯데정밀화학

롯데정밀화학주식회사 정관

제 정	1964년 08월 15일	제23차 개정	1986년 02월 28일
제 1차 개정	1965년 02월 22일	제24차 개정	1987년 02월 27일
제 2차 개정	1965년 07월 23일	제25차 개정	1988년 03월 18일
제 3차 개정	1965년 07월 28일	제26차 개정	1989년 03월 21일
제 4차 개정	1965년 09월 03일	제27차 개정	1991년 03월 22일
제 5차 개정	1965년 09월 06일	제28차 개정	1992년 03월 18일
제 6차 개정	1965년 11월 22일	제29차 개정	1993년 03월 18일
제 7차 개정	1966년 01월 17일	제30차 개정	1994년 03월 22일
제 8차 개정	1966년 02월 12일	제31차 개정	1994년 10월 26일
제 9차 개정	1966년 08월 23일	제32차 개정	1995년 03월 07일
제10차 개정	1967년 02월 13일	제33차 개정	1996년 03월 05일
제11차 개정	1968년 02월 26일	제34차 개정	1997년 03월 04일
제12차 개정	1969년 02월 26일	제35차 개정	1998년 03월 24일
제13차 개정	1969년 03월 18일	제36차 개정	1999년 03월 20일
제14차 개정	1969년 07월 09일	제37차 개정	2000년 03월 16일
제15차 개정	1973년 02월 26일	제38차 개정	2001년 03월 09일
제16차 개정	1974년 02월 28일	제39차 개정	2002년 02월 28일
제17차 개정	1974년 09월 05일	제40차 개정	2006년 02월 28일
제18차 개정	1975년 11월 14일	제41차 개정	2010년 03월 19일
제19차 개정	1976년 06월 28일	제42차 개정	2014년 03월 14일
제20차 개정	1977년 02월 28일	제43차 개정	2015년 03월 13일
제21차 개정	1981년 02월 28일	제44차 개정	2016년 02월 29일
제22차 개정	1985년 02월 28일	제45차 개정	2017년 03월 24일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롯데정밀화학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LOTTE Fine Chemical Co., Ltd.」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기초화합물 제조업
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3.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 기기,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 및 가공
4. 합성수지의 제조 및 가공

5. 정보전자소재 및 전기부품 소재의 제조 및 가공
6. 디스플레이용 소재 및 부품의 제조 및 가공
7.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8. 전 각호에 관련되는 각종 화학공업품의 제조 및 가공
9. 기계기구, 주제품, 단강품, 철강재의 제조 및 가공
10. 환경산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계, 제작 및 시공
11. 기초유기화학물질의 제조업
12. 철물 및 설비공사업
13. 임대 및 보관업
14. 신비종 및 시비효과측정등을 위한 시험포 설치운영
15. 정구장 및 기타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16. 택지조성과 주택건설 및 분양, 임대사업
17. 기술,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18. 교육 서비스업 및 사업관련 서비스업
19.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
20. 유틸리티(증기, 전력, 용수, LNG등) 제조, 판매, 중개업 및 서비스사업
21. 산업용 가스의 제조 및 가공
22. 화장품, 생활용품 원료 및 제품의 제조 및 가공
23. 각호의 사업에 관한 물품의 매매 및 수출입업, 도산매업, 대리업
24. 각호 사업에 부대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의 경영 및 투자

제3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 본 회사는 본점과 공장을 울산에 둔다.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지점 또는 국내외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lottefinechem.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중앙일보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천만주로 한다.

제6조(설립시의 발행주식) 본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일십만주로 한다.

제7조(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②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수를 일천만주로 한다.
-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이상을 배당하며 발행시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가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 ④ 전항의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은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 제3항에서 정한 우선주식의 배당률에 추가하여 보통주식의 배당률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거나 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⑥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⑦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⑧ (삭 제 2000.3.16)

제9조(주권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제10조의3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제10조의4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의2(신주의 배당기준일) 회사가 유·무상증자,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5조 제4항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3(일반공모증자) ①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의4(주식매수선택권) ① 본 회사는 임·직원(상법 제542조의3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임·직원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직원은 제외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⑤ (삭 제 2000.3.16)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이내에서 각 해당 주주총회 또는 해당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행사만료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 행사가가격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조건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되,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의5(주식의 소각) 본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본 회사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1조(시가발행) 본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2조(명의개서대리인)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사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을 제12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다만, 회사는 부득이한 경우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폐쇄기간의 2주간 전에 신문에 공고한다.

②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3장 사 채

제15조(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이사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결정하고, 대표이사에게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그 실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액면총액이 4,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의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금액중 3,0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1,0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간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는 결의로써 전환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45조 제4항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3(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의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1,5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50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의 기간내에서 동 사채의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45조 제4항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2조, 제13조, 제14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4장 주 주 총 회

제17조(소집시기)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21조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일정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중앙일보”와 울산광역시에서 발행되는 “경상일보”에 2회이상 공고하거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삭 제 2002.2.28)

제20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서울특별시 및 이의 인접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가 수인 인 경우 또는 대표이사 유고시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본 회사, 본 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주주총회의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제2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본 회사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주의 법정대리인이 제1항의 대리권을 다른 주주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격증명서도 같이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이사회 및 감사

제29조(이사)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의 선임에 의하여 이사 3인 이상 6인 이하를 둔다.

그 중 사외이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수로 한다.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1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인 이상의 이사를 보선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본 회사 또는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본 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혈연적 특수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되고 기타 법규 등에서 정하여진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제30조(이사의 임기) 이사와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1조(대표이사의 선임)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며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모든 업무를 통할한다.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소관 업무를 담당수행한다.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21조 후단을 준용한다.

제32조(이사회 권한) ① 이사회는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삭 제 2000.3.16)

제32조의2(위원회) ①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권한, 운영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의3(경영위원회) ① 이사회 결의로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경영위원회는 이사회 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수시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의한다.

③ 경영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3조(이사회 의의장)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서 구성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를 포함한다.

②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이에 임한다.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대표이사는 회일을 정하여 적어도 24시간 전에 이를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각 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표이사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이사회 의결방법) ① 이사회 의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6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이사의 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승인이 없으면 본 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취업중에 있음을 알고 이사로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감사)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의 선임에 의하여 감사 1인 이상 3인 이하를 두며, 그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그 중 상법을 포함한 관계법령에 따라 상근감사는 1인을 두고 사외감사는 1인을 둘 수 있다.

②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필요에 따라 회계전문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진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39조(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1조(감사의 보선)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3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6장 계 산

제42조(사업연도) 본 회사는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 재무제표 작성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에 연결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 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5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 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④ 본 회사는 사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6월30일을 기준일로 하여 동일자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제46조(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제7장 보 칙

제47조(세칙내규)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48조(육영문화사업 등) 본 회사는 제2조의 사업외에 이익금의 2할의 범위내에서 육영문화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정관은 1996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26조, 제28조, 제32조 제2항,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4항, 제39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15조 및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본 규정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1998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199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199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0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제30조(이사의 임기)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0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0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공고방법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제30조(이사의 임기) 개정규정은 정관 변경 후에 선임되는 이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